한국무역보험공사 경영위원회규정

제 정: 2007. 10. 10. 1차개정: 2009. 3. 25. 2차개정: 2010. 7. 6.

-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구성) ① 경영위원회는 사장 및 본부장으로 구성한다.
 - ② 경영위원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사장이 된다.
 -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, 의장이 미리 지정한 본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3 조(감사의 출석) 감사는 경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 4 조(소집) 경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권한 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다.
- 제 5 조(의결사항) ① 경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규정 및 약관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 - 2. 여유금의 운용 및 유가증권의 매매와 운용에 관한 사항
 - 3. 중요계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
 - 4. 대리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사항
 - 5.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
 - 6.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
 - 7. 다른 내규에서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사항
 - 8.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이사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.
 - ③ 경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사항 중 그 일부를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사장 및 본부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전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 6 조(보고사항)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 - 1. 법령 기타 다른 규정에서 경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
 - 2.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 7 조(의결방법) 경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제 8 조(의결권 행사의 제한) 경영위원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장 및 본부장은 그 안건 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장 및 본부장은 제7조의 재적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- 제 9 조(관계자의 출석)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경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 10 조(의사록)① 의사담당부서장은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 - ② 의사록은 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비치용으로 보관하고 부본은 의장이 따로 지정하는 곳에 보관한다.
 - ③ 의사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 - 1. 개회 및 폐회의 일시
 - 2. 출석 또는 결석한 인원의 성명
 - 3. 회의 사항 및 의결사항
 - 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④ 제3항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출석인원과 의사담당부서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비상임이사 선임일까지 경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은 이사회가 심의·의결하다.

제2조(다른 내규의 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아래 내규상의 "이사회"는 "경영위원회"로 개정된 것으로 한다.

- 1. 「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인수규정」제5조,
- 2. 「투자위험보증계정 운영규정」제7조, 제16조 및 별표1-2,
- 3. 「신뢰성보험 보상규정」제3조,
- 4. 「보상규정」제25조,
- 5. 「회계규정」제75조, 제111조,
- 6. 「외부회계감사인 선정지침」제5조,
- 7. 「단기 인수규정」제1-7조, 제2-34조,
- 8. 「중장기 인수규정」제1-5조, 제4-5조, 제4-7조, 제8-2조, 제10-2조,
- 9. 「수출신용보증(선적전) 인수규정」제1-4조,
- 10. 「신뢰성보험 인수규정」제1-4조,
- 11. 「인수심사위원회규정」제3조,
- 12.「채무감면요강」제23조,
- 13. 「수출신용보증(선적전) 인수요강」 제4조, 제26조

부 칙(1)

이 규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